

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

제정 2026. 2. 24. 조례 제384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해야생동물”이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.
2. “먹이”란 곡물, 씨앗, 채소,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.
3. “먹이주기”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.

제3조(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) ①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(이하 “금지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
3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
4.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
5.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,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위치 및 범위
2. 지정 근거 규정

3. 지정·변경·해제 사유

4. 지정·변경·해제 날짜

5.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

6.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먹이주기의 금지)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(금지구역의 표시)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, 범위 및 지정 목적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먹이주기 금지의 홍보)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과태료) 시장은 제4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,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